

##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의 문제점에 관한 공청회

- 자격시험이라고 하여 로스쿨만 나오면  
누구나 쉽게 붙여 주어야 하는 시험이 아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모색을 위해 지난 2월 1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의 문제점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 김한규 변호사의 사회로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이광수 변호사와 허중혁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맡았고 양계형 일본 변호사와 김용섭 전북대 로스쿨 교수, 이민 변호사, 정재호 한국일보 기자, 성시민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일본 변호사, 로스쿨출신 변호사, 로스쿨 교수, 사시출신 변호사들을 망라한 공청회로는 최초의 사례이다.

이날의 공청회에서는 로스쿨의 입학정원과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과정이 합리적인 논의와 합의에 기초하지 않고 일부의 집단행동에 의해 급격한 확대방향으로 결정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자격시험이어야 하는지, 합격률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열띤 주장이 오고 갔다.

발표자와 토론자들 모두 변호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지는 역할, 그로 인한 변호사 수급이 타 직역과 달리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 되더라도 변호사자격은 모든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전문자격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변별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로스쿨을 나왔다고 해서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것은 오히려 자격시험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자격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로스쿨만 나오면 무조건 자격을 인정받도록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의견이 접근하였으며 합격률의 결정에 있어서도 사전에 몇 %의 비율을 정하는 방안의 부적절성이나, 60%부터 80%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

다. 적절한 법조인력의 규모를 살핌에 있어서는 법조유사직역의 존재 여부와 나홀로 소송의 증가현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발표 과정에서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단계부터 적절한 법조인력수급을 고려한다는 것에 합의가 있었는데 그 후 로스쿨 입학정원과 합격률 결정과정에서 당초의 점진적 확대방안이 로스쿨 측의 실행행사로 인하여 급격한 확대방안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용되어 합격점수에 미달하는 응시자가 다수 발생하더라도 집단행동으로 합격자를 늘리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모든 발표자와 토론자가 변호사시험의 가장 큰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조차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체제와 교과과정을 실무가 양성에 적합하도록 전면적으로 재편하여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양계형 일본 변호사는 일본의 로스쿨은 법학기수자와 미수자의 교과과정이 다르다는 점과 일본의 변호사시험 성적은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였다.

로스쿨의 학사관리 엄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로스쿨의 특성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당초 로스쿨 도입 취지는 대학 학부교육을 정상화하고 학부의 다양한 전공경험을 토대로 로스쿨에서 법학적 소양을 훈련받아 전문적인 변호사를 양성하자는 것이었으므로 로스쿨 자체를 특성화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오히려 로스쿨에서는 변호사로서의 기본실무에 충실할 수 있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